#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0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김성환·김정호·허성무

윤종오 • 백승아 • 박지혜

이소영 · 서왕진 · 권향엽

황정아 · 최민희 · 허 영

김남근 · 김기표 · 차지호

복기왕 · 정진욱 · 김 윤

오세희 • 전현희 • 강경숙

김원이 · 김동아 · 위성곤

이재관 · 남인순 · 문대림

김영배 · 박희승 · 양부남

정태호 • 윤건영 • 문금주

김영화 · 박정현 · 이광희

유준병 • 이재강 • 염태영

송재봉 · 박범계 · 임미애

박홍근 · 민형배 · 임광현

안호영 · 김태년 · 추미애

이기헌 · 황명선 · 김용만

의원(5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석탄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 법률 제 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전단 중 "사용"을 "수입·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는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그 밖에"를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취소"를 "취소와 제2항에 따른 생산비용의 산정"으로한다.

### 부 칙

이 법은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 -----수입·사용-----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 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 입자에 대하여는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 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⑧ 제1항 및 제5항<u>에 따른</u>----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생산비용의 산정
	<u>.</u>